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0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김선민·조 국·박은정

서왕진 · 차규근 · 김준형

신장식 · 이해민 · 정성호

전진숙 · 김재원 · 서영석

염태영 · 김민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 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
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립) 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	
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	
스원"이라 한다)을 <u>설립·운영</u>	<u>설립·운영하여야</u>
<u>할 수 있다</u> .	<u>한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